



■ 권 두 칼 럼

사회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제성호



용산 철거민 참사가 검찰의 발표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차분하게 사태의 진말을 돌이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다. 올바른 처방전을 찾으려면 정확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용산 참사의 주원인은 철거민 문제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등장한 지 40년이 넘지만 철거지구 재개발 때 발생하는 문제(피해보상, 영업권 보장, 주거권 확보 등)를 총괄하는 기구와 평화적 해결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사업자 측의 보상결정 내용을 철거민 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해당 지자체는 수수방관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용산 철거민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결정의 시정 방법으로 불법폭력시위를 택했다. 이는 전문적 시위꾼이라 할 수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같은 폭력의존 심리와 제3자 개입이 사태를 키우고 또 악화시켰던 것이다. 사전에 준비된 무기(시너, 화염병,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치밀하게 기획된 무단 점거와 무차별 공격은 시위 현장을 무법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러기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불가피했다.

'폭력이 아니면 사태의 개선은 없다'거나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작금 한국 사회의 낮은 법치 수준을 반영한다. 이런 사고가 만연하고, 또 불법이 통하게 되면 누구든 법규범보다는 물리적인 힘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막무가내식 때쓰기나 밀어붙이기식 폭력사태는 '약자의 무기'로써 계속되는 반면, 사회적 평온과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치의 경시는 오랜 '한국병'으로 남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를 정도다. 이는 불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태도 및 사법은정주의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제 반법치와 야만적 폭력은 나라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성숙한 국민 의식과 사회적 풍토를 뿌리내리는 게 시급하다. 더불어 집회 천국, 시위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보듯, 자유와 인권의 남용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용산 참사를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태로 축소시키고, 경찰의 진압방법 개선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다. 철거민 대책은 별도로 최선의 해법을 구하면서 동시에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공권력 바로 세우기로 대처해야 한다. 전자는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후자는 '원칙'과 '불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사회지도층이 폭력사태 발생 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불법폭력의 확산을 막는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희생자 추모보다는 이 같은 자세가 더욱 책임성 있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용산 참사의 교훈은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지금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정쟁에 매달리거나 희생양을 찾는 것만으론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각국 경·검 수사권한 비교 연구

정 지 운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한 국가의 법과 질서의 유지는 국가행정구조의 초석이 되므로 정상적인 정부조직은 그 불가결한 제도의 하나로서 반드시 상설의 경찰조직을 두고 있다.

「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의 임무는 “국가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한다.

경찰의 임무들은 각각의 별개의 개별적 임무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용한다. 경찰의 이러한 임무 중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는 **범죄의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54조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 각국의 법제도와 법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고 각국의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어찌면 그 국가에만 가장 적합할 뿐이며 다른 국가에는 부적합 제도일 수도 있다.

미 국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주에 따라 주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인정되며, 특정범죄에 대하여 특별수사권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이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 상급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증거를 검토하게 하는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수사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사건부에 등재(booking)하고, 피의자를 치안판사에게 최초 출두(initial hearing or presentation)하기 전에 죄명을 특정하기 위한 검토과정이다. 따라서 경찰이 치안판사에게 피의자를 대동하기 전까지 검사는 그 사건을 알지 못한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권, 피의자신문권, 검증권, 증거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체포한 뒤에는 지체 없이 치안판사에게 피의자를 대동하여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 받으며,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각종의 권리를 고지한다.

영 국

대륙법계 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의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한다. 영국의 경찰은 영장 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범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그 소속기관 내의 범죄나 관련범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진다.

1985년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의 제정으로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설립되었다. 왕립기소청은 기소의 주요 담당기관일 뿐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다른 기관도 형사사건의 기소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제도(Private Prosecutions)가 인정(「범죄기소법」 제6조)되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기소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찰과 검찰은 범죄의 수사과 기소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 본

일본에서 사법경찰직원이라 함은 「형소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법경찰원과 사법순사의 총칭이다. 사법경찰직원을 사법경찰원과 사법순사로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경찰원에게는 독립된 수사주체로서의 임무와 권한을 부여한 반면, 사법순사에게는 사법경찰원의 지휘 하에 수사보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의 주재자(형소법 제189조 제2항)로서, 사법경찰직원에게 제1차적으로 범죄수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물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구역에는 제한이 있다. 즉, 도·도·부·현경찰의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도·도·부·현경찰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독 일

독일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위험방지과 제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활동에 재량권이 부여된다. 구체적 운영실태를 보면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범죄발생 및 증거수집에 관하여 보고업무가 있지만(「형소법」 제161조), 실제로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 등 네 개의 중요범죄 이외에는 그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기타 경범죄·중간범죄 등은 사건송치를 받고서 비로소 검사가 그 범죄를 인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 발생한 범죄사건의 규명과 범인의 검거 및 증거수집을 행하는 경우, 즉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는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프 랑 스

프랑스의 사법경찰은 모든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송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검찰에 대한 보고의무를 거의 준수하지 않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대규모사건 또는 미묘하게 엮힌 사건의 경우에만 이것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는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경찰이 범죄를 확인한 뒤에 직권으로서도 경찰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는 때문이다(단, 이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형소법」 제75조)). 사실상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는 사법경찰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가 시행하는 법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 중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국가의 현실이 어떻든 그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며, 그 국가에 적합한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현재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경찰의 임무로서의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범죄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변화는 범죄의 지능화로 특징지을 수 있고, 부수적으로 광역화나 가속화도 또한 특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님을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8호 당첨자 : 유윤종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단기연구과제 논문요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제도 개선

권태형 전문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행정연구실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는 크게 면허체계, 면허시험, 안전운전교육, 무보험, 무등록, 고속도로 통행허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과 관련 있는 면허체계, 면허시험, 안전운전교육, 고속도로 통행허용 등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요약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시험과 운전면허체계 부분을 위주로 소개한다.

I.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1. 현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 면허시험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학과시험 합격률은 원동기-2종소형-2종보통-1종보통 순이고, 기능시험 합격률은 원동기-2종보통-1종보통-2종소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종소형 기능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륜차 운전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은 464개소이다. 이 중에서 2종소형 면허 과정이 있는 학원은 22개소로 4.6%이고, 원동기 면허과정이 있는 학원은 13개소로 2.8%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은 이륜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륜차 운전을 배우려면 결국 아는 사람에게 배우거나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 밖에 없다.

2. 개선방안

1종보통/2종보통의 기능시험은 장내주행과 도로주행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이륜차 기능시험은 굴절

코스-곡선코스-좁은길코스-연속진로전환코스 4가지로 되어 있는 장내코스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이와 같은 단절식 4가지 코스만으로는 도로주행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륜차 면허시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제 도로주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내주행시험을 실시한다. 현재의 면허시험장 코스를 이용하여 급제동 능력, 경사로 정지 후 주행, 교통법규 준수 운전 여부 등을 평가한다.

둘째, 운전면허학원 출장시험을 확대한다. 운전면허학원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에 이륜차 코스를 추가하도록 한다. 현재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동기면허시험은 운전면허 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소형원동기면허시험(50cc 미만, 신설)은 경찰서에서도 실시하게 한다.

셋째, 운전자의 이륜차 안전운전태도 등도 평가하여 안전운전 습관을 면허취득 전에 익히도록 한다.

넷째, 장내 코스 규격을 완화한다. 1종보통/2종보통/원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종소형의 기능시험 합격률(27%)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종소형 면허 응시자들로부터 '써커스'라고 불리며, 가장 많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는 굴절코스만 규격을 변경해도 합격률은 조정될 것이다.

II. 이륜차 운전면허체계

1. 관련 동향

이륜차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륜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 7월 17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

총리)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시행계획에서 정부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이륜차 면허체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2. 이륜차 운전면허체계 변경안 비교 검토

경찰청은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즉 모든 이륜차(원동기 포함)는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변경방안에 비하여 절차상 간단하다.

다른 이륜차 운전면허체계 변경방안에 대한 비교·검토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이륜차 운전면허체계 변경방안 비교 검토

구분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범위	비고
경찰청	2종 소형	무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사륜차 면허로 운전 불가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이륜대형	무제한	현행 2종 소형
	이륜보통	125cc 이하	원동기면허 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
	소형한정	50cc 미만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특수		화물운송용 이륜차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중형이륜	무제한	현행 2종 소형
	경형이륜	125cc 이하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	원동기면허소지자는 경형이륜으로 갱신 필요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이륜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 약 3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① 우리나라 전체 이륜차 수: 350만대(미등록 포함 추정치)
- ② 이륜차 면허소지자: 213만명(2종소형+원동기)
- ③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 137만명(①-②)
- ④ 이륜차 면허 취득비용(교습료 제외): 23,000원
- ⑤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이륜차 면허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전체 비용: 315억원(③X④)

또한 137만 명이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몰려들면 심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문제를 최소화 하고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륜차 면허 소지자가 모두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려면 앞에서 추산한 바와 같이 수 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처럼 50cc 미만 이륜차를 운전하는 면허(소형원동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50cc 미만 이륜차는 사륜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50cc 이상 이륜차 운전이 필요한 사륜차 면허소지자는 이륜차 기능시험만 보고 원동기/2종소형 면허증을 취득하게 한다.

이와 함께 원동기면허 취득나이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소형원동기 면허만 취득할 수 있게 하여 10대 청소년 폭주족들이 애용하는 100cc급이나 125cc급 이륜차를 원칙적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2> 이륜차 면허체계 변경안

구분	종별	2종 소형	원동기 장치자전거	소형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무제한	~ 125cc 미만	~ 50cc 미만
취득나이		18세	18세	16세
기능시험 방법		코스주행 및 장내주행	코스주행 및 장내주행	코스주행
시험장소		면허시험장, 학원	면허시험장, 학원	면허시험장, 학원, 경찰서
학과시험방법		4지선다형	4지선다형	OX형
사륜차면허 운전여부		불가	불가	가능

면허취득 전 안전교육에서 이륜차와 사륜차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 이륜차 시험 응시자에게는 이륜차에 맞는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사륜차 안전운전교육에서는 이륜차의 특성과 이륜차를 보호·방어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은 시기상조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PSI**

■ **응역연구과제 논문 요약**

경찰의 이미지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한 연구

양문승 교수 외 2인/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이 일상적이며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정책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국민에 대한 경찰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이미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에 실시한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형적·내형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2004년 이미지 조사 이후 각종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의 이미지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4년에 실시된 연구지표에 기반하여, 그간 실시된 각종 대책이 경찰이미지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그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 경찰이미지 향상을 위한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표본은 경찰관과 경찰서 방문 일반시민으로 200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출하였고, 조사대상은 경찰관 720명, 시민 720명으로 총 1,440명이었다. 각 경찰서별 경찰관 15명, 민원인 20명으로 24개 기관에서 경찰관 360명, 민원인 360명으로 선정하였고, 순찰지구대는 경찰관 15명, 민원인 10명으로 24개소에서 경찰관 360명, 민원인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크게 경찰이미지 평가와 경찰활동 평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이미지 평가측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찰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주된 것으로 경찰 제복과 경찰순찰차량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주된 경로는 경찰관의 언행이나 태도로 나타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경찰과의 직접 접촉한 경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4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이미지 평가(100점 만점)에서 시민 평가는 66.7점이고 경찰은 77.2점으로 나타나 2004년과 비교하여 시민과 경찰 평가점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속성별로 살펴보면, 시민은 친절성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에 인권의식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에 전문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2004년 이후 변화를 보면, 시민 평가에서는 공정성(+19.5)과 청렴성(+18.3)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시민들의 평가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접촉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범죄피해나 교통단속 관련하여 경찰을 접촉한 시민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고, 경찰의 직무나 계급 및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일수록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경찰활동 평가측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찰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점수는 시민 62.2점, 경찰 66.2점으로, 2004년에 비해서 시민의 평가점수는 8.6점 상승한 반면 경찰의 평가점수는 2.0점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로는, 시민과 경찰 모두 교통활동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시민의 경우 범죄수사 및 진압활동이고 경찰의 경우는 사회질서유지활동이었다. 이는 2004년 이후 시민들의 평가는 네 가지 분야에서 모두 상승하였지만 경찰은 상승한 분야가 전혀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평가를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가 낮게 평가하고, 40대 50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경찰 접촉횟수가 많아질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인지도의 경우, 인지도가 높으면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 활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시민과 경찰 모두 범죄예방활동 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중요도 평가와 활동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시민들이 바라보는 중점개선영역으로는 범죄예방활동과 사회질서유지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이미지 제고방안으로, 각 이미지 영역의 속성별, 경찰활동을 통한 이미지 형성경로별 이미지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이미지 영역의 속성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인 “공정성·청렴성, 전문성·신속성, 친절성·인권의식”의 3가지 측면에서 향후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공정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내부감찰 기능의 강화, 경찰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의 강화, 시민 참여를 통한 부패척결의 향상을 대안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활동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 교육의 개선과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행태의 변화를, 경찰의 친절성·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 경찰활동에 대한 강조와 함께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경찰 ombudsman 제도의 활성화, 인권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를 대안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경찰활동을 통한 이미지 형성경로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경찰이미지 형성경로별 특징인 “경찰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의 접촉, 경찰의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의 홍보를 통해, 경찰의 상징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대 언론관계와 대 국민관계의 측면에서 반론권의 실효적인 행사,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대민 접촉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 경찰홍보 전략의 변화를 대안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방안을 수행과 함께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찰조직으로의 변화의지는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의 응원과 협조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의 제고를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조직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인 : 조용관(연구부장)
편집위원 : 유동열(팀장)
김학신, 임현규, 조은순,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 촛불시위관련 분석

밈(meme)이론으로 본 한국의 촛불시위

함재봉 수석연구원/정치학박사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의 2008년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되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의 정확한 원인과 의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각종 아이디어나 상품, 그리고 사회적 행태가 확산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 소멸과정과 동일하다는 최신 네트워크이론에 기반을 둔 역학적 가설을 촛불시위에 적용하여 촛불시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경로로 비화되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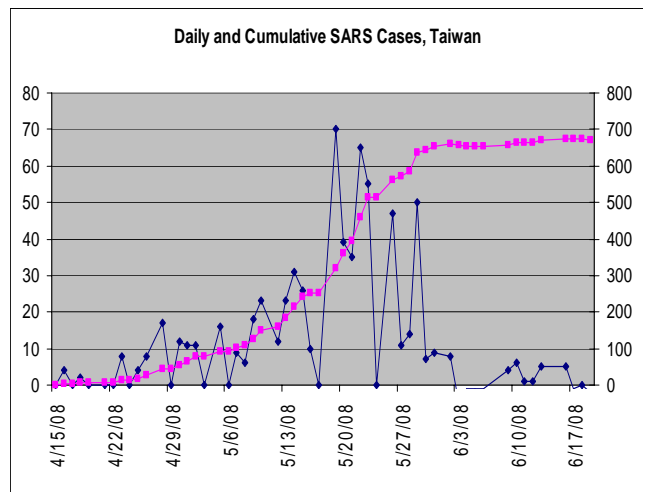
그 결과 지난해 촛불시위는 엽기적이라고 할 만큼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은 방송언론과 이렇게 생성된 ‘광우병괴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10대들 특유의 사회연결망 구조와 논리가 만들어내고 확산시킨 ‘전염병’의 일종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도표1>은 2003년 대만에서 발생한 사스(SARS) 바이러스 환자 수의 분포도로 약 2달간 관찰된 수치다. <도표2>는 2008년 5월2일 부터 7월1일 사이 국내에서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가자 숫자다. 두 그래프는 거의 동일한 분포도를 보여준다. 두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스의 경우 단위가 몇십명이지만, 촛불시위의 경우에는 그 단위가 만명정도 된다는 점이다. 또 내용상으로 볼때 한 그래프는 정치적/사회적 현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역학적 현상이다. 하지만 관찰단위 보다는 분포에 더 역점을 두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때 그래프는 분명 유사하다. 이러한 전염병의 발발과 확산, 그리고 소멸 과정이 어떻게 촛불시위와 같은 정치,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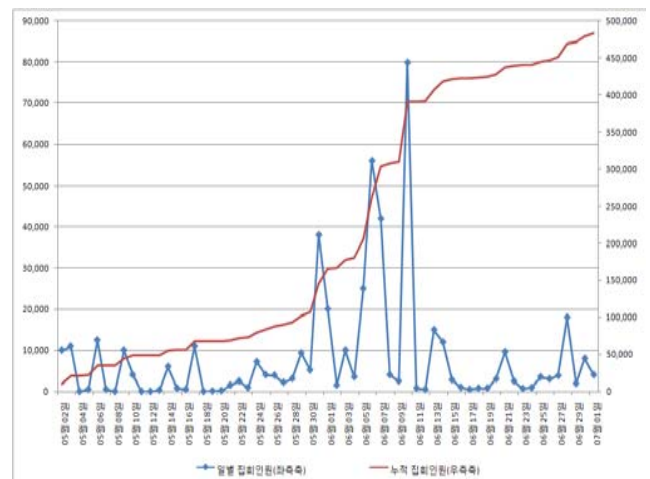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 는 1976년도에 출간과 동시 세계적인 선

풍을 일으킨 “The Selfish Gene” (이기적인 유전자) 이란 책에서 진화는 수많은 유전자들간의 생존 경쟁의 산물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도표1> 사스바이러스 환자 분포도



<도표2> 촛불시위 참가자수 분포도



그러면서 그는 생물학적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유전자들간의 생존 경쟁과 흡사한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인간의 사고/생각 (thought)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킨스는 ‘밈’(me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고대 그리스어로 ‘따라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mimeme’에서 마지막 두 음절을 딴 것이다.) ‘밈’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뜻하며 인간의 뇌를 매개체로 이용하여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바이러스가 세포를 ‘점령’하여 자신을 복제하듯이 ‘밈’도 사람의 뇌를 점령하며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역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숙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다른 생각과의 조합을 통해 변이도 일으킨다. 물론 ‘밈’의 실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 ‘밈’에 감염된다고해서 진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전체가 그야말로 “열병을 앓듯이” 각종 유행에 휩쓸리는 경우를 수없이 본다. 그리고 ‘밈’의 전염과정은 실제 바이러스의 전염과정과 똑같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의 경우 “밈”은 무엇이었을까? ‘밈’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광우병 밈’의 진원지는 MBC의 PD수첩이었다. 특히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미국의 민간단체)의 동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얹은뱅이 소’ 장면은 그 자체가 강력한 밈이 됐다.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사이의 결코 간단치 않은 연관관계를 ‘얹은뱅이 소’ 한 장면으로 단순화 시켰고, 그 간단함과 고착성은 ‘광우병’ 밈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PD수첩은 2주후 후속방송을 내보냄으로서 밈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런데 이 ‘광우병 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회계층은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전염병의 역학적 관점에서 볼때 10대들은 요주의 대상이다. 10대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어른들과는 달리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학교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학교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용소보다 더 나쁘다.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자동적으로 외부와 격리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10대는 또래들로부터 전염된 병원체를 그대로 집안까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광우병 밈’을 제공해준 것은 방송미디어였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시위 중에는 인터넷의 역할보다는 공중과 방송매체의 역할이 훨씬 크고 중요했다. 인터넷 토론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아고라는 인터넷의 장점(통신의 간편함, 확장성; scalability) 등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토론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주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의 결사(association)를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다. 원래 인터넷엔 토론장보단 동호회가 더 많은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386세대가 촛불시위에 쉽게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도심 특유의 구조도 한 몫을 했다. 촛불시위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고 회사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청계광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열린 촛불시위는 30대와 40대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잠깐 들러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초기 광우병 밈이 10대와 20대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했다면, 386세대에게 전염되면서 광우병 밈은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중속적 위치에 있다는 386세대들의 세계관과 이명박 보수정권이 대표하는 한국사회의 주류층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이 합쳐지면서 소고기 수입문제를 단순한 먹거리 문제에서 대미중속과 계층간의 정치적 문제 변질되었다. 바이러스가 여러 숙주를 거치면서 변이하듯 광우병 밈 역시 새로운 계층으로 전이되면서 변이된 것이다. 그리고 386세대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위대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을 대표하기 시작했다. 촛불시위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한 것이다. 이때부터 촛불시위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 민주화 투쟁과 노사분쟁 경험을 통해서 불법 폭력시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30대와 40대가 주도하는 시위는 폭력적이 되는 한편 노골적인 반정부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시위대가 청계광장을 벗어나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부딪치기 시작한 것은 386세대가 시위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촛불시위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는 시위참여에 따르는 유-무형의 비용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시위장소 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들고, 시위에 여가시간이나 근로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이 있고, 또 혹시 모를 경찰에 의한 연행이나 진압 중에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부상에서 오는 예상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너무 낮다. 광화문 인근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얽힌 지역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손쉽게 찾아올 수 있다. 또 서울은 선진국 대도시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야간에도 비교적 안전하다. 따라서 밤에도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들도 부담 없이 서울 외곽에서 부더라도 얼마 안 걸리는 시간 내에 시위장소로 모일 수 있다. 밤에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장인들도 생업과 근로시간, 소득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시위진압이 주는 억제효과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불해야 할 법적 대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비용 또한 낮다.

386세대의 시각이 반영되면서 새롭게 “변이”된 광우병 밭은 진보적 미디어의 절대적 지원을 받으면서 좌파진영에 강하게 어필하였다. 그리고 이들 386세대가 순식간에 광화문으로 모이면서 촛불시위는 티핑포인트를 지나 절정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386세대의 가세로 티핑포인트에 도달한 촛불시위는 6월 10일 10만에 가까운 인파를 동원하면서 절정에 달하지만 그 이후 갑자기 약화되기 시작했다. 어째서였나?

우선 새롭게 “변이”된 광우병 밭이 좌파진영을 결집시켰다면 보수진영 또한 빠르게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는 역학모형에서 인구의 일부분이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과 같다. 10-20대와 386세대가 공유하던 암묵적 합의였던 비폭력적이며 비정치적인, 즉 거리응원 같은 시위는 386세대가 촛불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확산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촛불시위가 활력을 잃게 되자 처음과는 반대로 역 밴드왜건 효과(남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이탈하는 현상)에 의해서 일부 급진세력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시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촛불시위의 역설은, 10대와 20대가 주도한 시위에 386세대가 참여함으로써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386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촛불시위의 소멸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촛불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느끼는 시위 예상 비용을 현실화(인상) 해야 한다. 백신이 없는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감염자와 감염노출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시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시위 기대 심리, 즉 불법시위에 참가해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즉흥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과연 높은 예상 비용(벌금)을 치를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하게 함으로서 시위를 주도하는 소수의 초기 전파자들로부터 대중을 격리시키는 효과를 얻어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촛불시위는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의 새로운 시위행태이며 미래의 시위행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의 역학에서부터 도시구조에 기반한 치안정책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고 세심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PSI**

이 글은 2009년 1월 16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 주관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美 랜드연구소의 함재봉 박사(전 연세대 정외과 교수)가 발표한 것을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유동열 선임연구관이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 핫이슈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인가?

김학신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I.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논란

현재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비방행위, 모욕행위 등은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악성댓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의 심각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법제화 추진(「형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추진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근거없이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 신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죄의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고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취지가 악성댓글의 감소인데 이것이 악성댓글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II. 사이버 모욕죄란?

현행 형법상 모욕죄라 함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1조).

이러한 모욕죄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한 것이 사이버 모욕죄인데, 사이버 모욕죄라 함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모욕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돼도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만들어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모욕의 대부분인 욕설은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II.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현재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찬성의 견해

먼저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첫째, 익명성 및 비대면성을 이용한 악성댓글 등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방지 할 경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도를 넘은 악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상 범죄는 인격권 침해 후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법적인 규율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형법으로도 악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행위는 전파의 신속성과 피해의 광범위성 등 인터넷이 지닌 매체적 특수성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넷째,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관하여 찬성하고 있다.

2. 반대의 견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는 첫째, 이 법안의 신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침해의 우려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정치적인 의도로 쓰일 수 있다.

둘째,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이 법의 도입 취지가 악성댓글 감소인데,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법에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인터넷상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죄의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이버모욕죄를 만든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 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정치 사찰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석하여 반대의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IV.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내용과 기타 논의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여당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2008. 10. 30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 형법 개정안은 ㉞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㉟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㊱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㊲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제2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도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입법적인 대안 이외에도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학교 교육을 확산시키는 한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순기능을 키우도록 노력하여 인터넷 문화가 건전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사이버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댓글을 통한 욕설과 비방, 유언비어 등은 인터넷 기업, 포털 사이트 등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본인 확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악플보다는 선플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바른 사이버 윤리 문화를 갖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SI](#)

■ 현장경찰관의 목소리

지역경찰제 근무 효율화에 대한 제언

: 근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경사 유 윤 중

경기지방경찰청 안성경찰서 원곡파출소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찰제가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느낀 제도·근무·장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지역 치안상황에 따른 파출소 설치

지역경찰제는 대도시에서는 효과적이거나 관할구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구대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읍·면 소재지 경우는 지구대를 운영하되, 주민들의 요구와 치안수요에 따라 필요시 파출소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상황에 적합한 지역경찰 근무 방법

변사사건 처리와 같이 1·2급서에서는 본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3급서에서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같은 3급서 외근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유동인구가 적은 3급서에서는 매일 실시하는 목검문으로 자주 검문을 받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4일에 한 번씩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운전자 외에 동승자와 행선지까지 기록하여 운전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목배치 근무일지 양식도 좀 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신고접수 프로그램

지구대·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신고 접수프로그램 화면에 '112 신고'라고 나오는 부분을 수정하고, 입력내용 변경이 잘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첩보(PORMS) 및 범죄첩보(CIAS) 프로그램

로그인상태 유지 시간이 짧아 첩보나 문서 작성 중 로그아웃되어 작성한 내용이 사라진다. 로그인 유지 시간을 늘리고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글 작성 후 전송하기 전에 전송확인창이 나

온다면 실수를 줄여줄 것이다. CIAS에서도 PORMS 처럼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이다.

■ 경찰PDA, 휴대폰조회기

휴대폰 조회기처럼 경찰 PDA에서도 차량 조회시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 자격여부도 함께 조회되어 보여준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시 새로 변경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사진도 조회가 가능하게 개선이 되길 바란다.

휴대폰 조회기의 경우 불편한 입력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무전기

기본 통신장비인 무전기가 송수신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 결함을 개선하고 기본성능에 충실한 무전기를 보급하고, 중계장비 등을 설치하여 전파 음영지역을 없애 치안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자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민원안내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하여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사건관련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 일만원권 지폐와 유사한 교통질서협조장

교통질서협조장의 표면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일만원권과 흡사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교통질서협조장을 발부하는 모습이 오해를 일으키게 하므로 협조장 색상변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및 장비 등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PSI**

2009년 연구과제 예비심사회 개최

2009년 2월 23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 외부용역 연구과제 예비심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수행과제와의 중복 및 유사연구사례 여부, 연구과제의 적시성, 실무활용 가능성·타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 등에서 의뢰한 22개과제를 예비과제로 선정하였다. 2009년 용역연구과제는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찰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09년 책임연구과제 1차 선정

2009년 1월 13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소속연구관 책임연구과제를 1차 선정하였다.

No.	연구과제명	담당연구관
1	경찰감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감사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상수
2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경찰관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연구	임현규
3	교통참여(현장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조은순
4	IT를 이용한 경찰교육 선진화 방안	권태형
5	불심검문과 경미사건에서의 인권보호방안 연구	손찬호
6	디지털 범죄수사와 기본권에 관한 연구	김학신
7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의 역할	유지웅
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관련하여 -	정지운
9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형범
10	한국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 용
11	사이비종교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최경환
12	'전의경 전역자 경찰관 특채' 관련 연구	선승석
13	국내 안보위해권의 통일론에 대한 보안경찰차원의 대응방안	유동열
1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송경호
15	북한 공안기관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	김윤영

연구관 연구발표회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월 중 3회에 걸쳐 전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자	발 표 주 제	발표자
2. 9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양상과 특징	유동열
2. 16	최근 북한의 정세동향과 향후전망	송경호
2. 23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분석	김학신

◆ 김길배 소장과 조용관 연구부장은 2009년 2월 24일 순천향대학교 제6대 손풍삼 총장 취임식에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는 2007년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9년 2월 3일 국방부 민사심리전참모부 워크숍에 초청되어,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양상 및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정 용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09년 2월 25일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서 '신입경찰관의 입직동기와 지역경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사발령(전출): 2009년 2월 3일자로 이동규 연구관(범죄수사실, 경감)이 독일주재관(영사)으로 발령받았다. 또한, 2009년 2월 10일자로 백창현 연구관(정책기획실, 경감)이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전출되었다.

◆ 인사발령(전입): 2009년 2월 10일자로 이형범 경감이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실연구실 연구관으로, 선승석 경감이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연구관으로 발령받아 부임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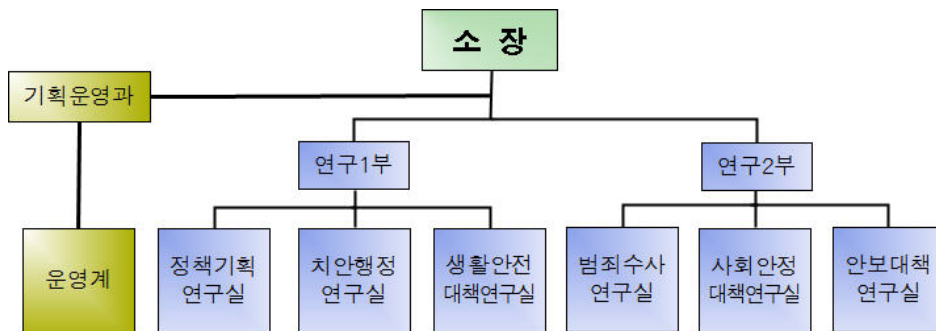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SI](http://psi.go.kr)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치안정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 및 제도개선 등 치안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의 보수·후생 등 복지관련 사항 연구
치안행정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 정보통신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의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 경찰교통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 관련 범죄연구 경찰 외근업무,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대책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사회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정보활동 및 국내사회안전대책연구 경찰경비활동 및 대테러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위 연구분야와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webmaster@psi.go.kr)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